

협 조 전

안전보건팀 / 담당자 : 유장열 이사
TEL 031- 645-2251 / FAX (031) 758-0537

문서번호 : 안전보건팀 22 - 20호
시행일자 : 2022. 10.27
수 신 : 현장소장
참 조 : 안전관리자 /관리감독자
제 목 : 도급사업의 노·사 합동 안전점검 실시 철저

1. 전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.

2.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2항, 시행규칙 제82조 규정에 의거 노·사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장에서는 해당 안전점검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고용노동부 특별 점검 시 과태료 부과 처분 등 행정조치를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바,

3. 당사 각 현장은 법적 노·사 합동 안전점검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거나,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·사 합동 안전점검을 누락 없이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: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1부 . 끝.

안 전 보 건 팀 장



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	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
<p>제64조(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)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5. 18.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. 작업장 순회점검 3.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.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. 작업 장소에서 화재·폭발, 토사·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.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.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·내용,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.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흔재로 인하여 화재·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·내용 등의 조정 <p>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, 작업장 순회점검, 안전보건교육 지원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</p>	<p>제82조(도급사업의 합동 안전·보건점검)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도급인(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) 2. 관계수급인(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) 3.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(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) <p>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·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다음 각 목의 사업: 2개월에 1회 이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건설업 나.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.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: 분기에 1회 이상